제227회 임시회
2004. 5. 28.(금)

심 사 보 고 서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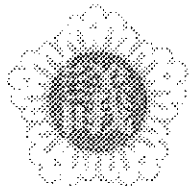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심 사 보 고

2004.5.28.(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5월 12일
○ 회부일자 : 2004년 5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4. 5. 24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2004년1월1일 이관운영됨에 따라 자산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5조2항에 의거 도의회 의결

○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시설 장비 등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자산출연 총괄

(단위 : 원)

품 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장비 등 322종	952,917,423	398,618,417	554,299,006

○ 1999년12월부터 도입된 컴퓨터장비 및 시설, 비품 등으로 2002년 1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 이관시 이관 받은 물품이 포함됨.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

○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대형컴퓨터 등 장비와 비품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

의안 번호	198

제출연월일 : 2004년 5월1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2004년1월1일 이관 운영됨에 따라 자산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5조2항에 의거 도의회 의결

○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시설 장비 등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

□ 주요내용

○ 자산출연 총괄 (단위 : 원)

품 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장비 등 322점	952,917,423	398,618,417	554,299,006

○ 1999년12월부터 도입된 컴퓨터장비 및 시설, 비품 등으로 2002년 1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 이관시 이관 받은 물품이 포함됨

□ 의안전문 : 따로붙임

□ 관계법령 : 따로붙임

(지방재정법 제15조2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제7조)

자 산 출 연 내 역

2004. 1. 31현재 (단위 : 원)

번호	자 산 명	수량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계	322	952,917,423	398,618,417	554,299,006
1	서버(GP7000/400)	1	28,300,000	21,225,000	7,075,000
2	Workstation/그래픽서버	2	29,819,400	22,364,550	7,454,850
3	Mainswitch hub(Omni-5wx)	1	18,600,000	13,950,000	4,650,000
4	S/W(Maya Complete Package)	2	31,900,000	23,925,000	7,975,000
5	S/W(Oracle Enterprise)	1	16,450,000	12,337,500	4,112,500
6	S/W(Uni sql X4.Ok, Uni web,Vision3)	1	20,900,000	15,675,000	5,225,000
7	LCD Projector(LPF-6200)	1	13,200,000	9,900,000	3,300,000
8	Gigabit Backbone Switch	1	22,000,000	5,500,000	16,500,000
9	방화벽 Server(Ultra60)	1	10,000,000	2,500,000	7,500,000
10	LCD Projector(PLC-XP46)	1	12,950,000	3,237,500	9,712,500
11	냉·난방기(업체용)	17	33,663,000	8,415,750	25,247,250
12	무인경비 시스템	1	10,516,000	2,629,000	7,887,000
13	CD자동복사기	1	13,200,000	3,300,000	9,900,000
14	믹서(음향영상편집장비)	1	10,459,500	0	10,459,500
15	방음및의장시설(스튜디오용)	1	17,334,000	0	17,334,000
16	PC	92	112,332,000	0	112,332,000
17	17인치 LCD 모니터	56	21,098,000	0	21,098,000
18	Backup Xcelerator Standard V2.0, Server	1	15,871,000	0	15,871,000
19	기타(1천만원미만 자산)	140	514,324,523	253,659,117	260,665,406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5조2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

□ 지방재정법

第14條 (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 ①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公共機關이 아닌 團體에 寄附·補助 또는 기타 公金의 支出을 할 수 없다.

1.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
2. 國庫補助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國家가 지정한 경우
3. 用途를 지정한 寄附金에 의한 경우
4. 地方自治團體가 勸奬하는 事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가 勸奬하는 事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出資의 제한)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團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地方公團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會員으로 하는 公益法人외의 團體에 대하여는 出資를 할 수 없다. 다만, 地方自治團體가 地方公企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1.12.31>

②地方自治團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1.12.31>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지식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창벤처프라자 관리 및 운영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지식·소프트웨어산업의 유치 및 육성 관련 사업
4. 벤처기업 및 첨단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기술, 정보, 인력, 자금 등 지원

제7조(재산출연)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 및 지원금
2. 도 및 시 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3.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